

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. 9. 8

황선화 의원(대표발의), 은복실 의원, 임종숙 의원, 이민옥 의원
김종곤 의원, 남연희 의원, 양옥희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라. 상정일자: 2021. 10. 18.

(제262회 임시회 개최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이유

가. 제안설명: 황선화 의원

나. 제안이유

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- 나.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다. 환경위원회의 자문(안 제5조)
- 라.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(안 제6조)
- 마. 사회·마을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(안 제7조~제8조)
- 바.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등(안 제10조~제11조)
- 사. 실비지급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, 제10조, 제13조, 제24조 및 제25조
(2021.1.5.전부개정, 2022.1.6.시행)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28조
- 나. 협조부서: 맑은환경과
- 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- 라. 입법예고(2021. 9. 30. ~ 10. 5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¹⁾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

1) 탄소중립이란 개인, 회사,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.

관한 법률」이 2022.1.6. 시행 예정에 있어 우리 구도 시행일을 상위법에 맞춰 준수하였습니다.

- “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(2021~2025)”에 의거 환경부는 환경교육 기반 구축, 학교환경교육 활성화, 사회환경교육 강화, 환경교육 협력 확대라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
 -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·기반 정비,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제고,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, 기후변화·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, 미래형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개발·보급
 -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, 시·도 단위별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, 학교급별 환경교육 실행 지원 제고,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
 -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,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,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보장
 - 환경교육 유관기관 협업 강화,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,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 등 본 계획에 진입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시의성있게 계획·시행 중에 있습니다.

-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'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으며,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광역-지역(기초)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

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보도²⁾한 바 있습니다.

○ 우리 구 환경교육 실적을 보면

구 분	교육 인원		
	2019년	2020년	2021년 9월 현재
합계	1,332명	783명	1,157명
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	669명	741명	467명
어린이 환경교실	261명	-	-
그린리더 양성 (초·중·고급)	402명	42명	690명

※ 성동구 맑은환경과 제공

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지 않아 교육인원이 감소하였으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○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, 전국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.³⁾ (2021. 9. 28. 기준)

○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의 근본적·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·마을 및 사업자의 환경교육을 통해 체

2) 2021.3.29.자 석간 “서울시, 2025년까지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25개 구축”

3)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“환경교육”으로 검색

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

- 더불어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6일인 바, 이에 맞춰 관련 준비와 필요 시 예산확보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본 조례안은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새로운 법체계에 따른 조례안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